2022년 수산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 인천광역시에서는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2022년 4월 25일 ~ 4월 29일까지 (5일간) 수산기술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19년 6월 이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다.
- 감사결과 총 13건(본처분 7건, 현지처분 6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되어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 등 조치를 하였으며,
- O 감사기간 중 발굴한 수범사례 3건을 공개함으로써, 산하 전 기관의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 감사결과

		처 분 요 구							
처분현황			처분종류(건)			재정상조치(건/천원)		신분상 조치(명)	
계	본처분	현지 처분	계	시정	주의	개선 통보	계	회수	훈계 등
13	7	6	13	4	9	-	2/2,716	2/2,716	_

제 목 홍합 시험양식 운영 부적정

기 관 명 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채취방법이 어려운 홍합의 시험양식을 통해 새로운 양식 기술을 개발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옹진군 OO면의 어장일부를 임차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홍합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다.

「수산업법」제45조 제3항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수산 기술지도보급기관·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에서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면허어업)·제41조(허가어업)·제42조(한시어업허가) 및 제47조 (신고어업)에도 불구하고 연구어업·교습어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제8조 및 제9조에는 「수산업법」제45조 제3항과 「어업의허가및신고등에관한규칙」제24조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어업인이 소유한 개별어장에서 과제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과제에 적합한 인허가를 취득한 어업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시범사업운영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어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지인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어업인이 소유한개별어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요령을 별도로 마련하여 객관성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에 의한 시범사업운영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사항을 기록·유지하는 등 충실한 현장시험과 조사 등 자료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어업인이 소유한 개별어장에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 요령 마련을 통해 시범어장을 선정하고, 어업권자와계약 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현지인에게 위탁·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별도의 사업자 선정 기준 없이 시험어장을 선정하였고, 2022년은 시범어장 사용에 대하여 어업권자와 계약 체결을 통하여 시험양식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 및 2021년에는 어업권자와 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지인을 어장관리인으로 선정하였으며, 시험어장 관리에 대해시범사업운영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나, 2021.8월~9월 기간을 제외하고는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아 시험양식장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였다.

또한, '홍합 시험양식 관리'를 위해 [표 1]과 같이 인건비는 매월 7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홍합 시험양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 계약서'를 관리인과 체결하였으며, 관리인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을 체결한 관리인의 본인 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나, 2020.7월부터 2021.12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지급된 인건비는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관리인의 개인사정으로부득이하게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는 일체의 관련 서류도 갖추지 않았다.

[표 1] '홍합 시험양식에 따른 관리인 지정 계약서' 현황

OH F		계약자(관리인)	계약기간	Ol Złul	
연도 성명 거주지		거주지] 세탁기신 	인건비	
2020년	aa	인천시 옹진군	2020.7.1.~2020.12.31.(6개월)	매월 700,000원	
2021년	aa	인천시 옹진군	2021.1.4.~2021.12.31.(12개월)	매월 700,000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합 시험양식장을 선정하시고, 홍합시험 양식이 성공 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어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보조금 정산 지연

기 관 명 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팀

내 용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표 1]과 같이 총 43개 사업에 대하여 해양수산부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1]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현황

(단위: 개 사업)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43	12	10	11	1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기록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35조에는 보조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폐지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는 보조금법 제27조와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으로부터 정산보고서 등이 포함된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회계연도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나, 4개월에서 2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 정산 처리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정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았다.

[표 2] 정산 지연 처리 현황 (해양수산부 보조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기간	정산일	정산지연기간
1	ㄱㄱ 사업	2016.1.1.~2016.10.6.	2019.10.14.	2년 10개월
2	ㄴㄴ 사업	2017.1.7.~2017.10.30.	2019.10.16.	2년
3	ㄷㄷ 사업	2018.1.1.~2018.5.29.	2019.10.17.	1년 5개월
4	ㄹㄹ 사업	2018.1.1.~2018.12.31.	2019.9.25.	7개월
5	ㅁㅁ 사업	2019.1.1.~2019.12.31.	2020.7.3.	5개월
6	ㅂㅂ 사업	2019.1.1.~2019.12.31.	2020.6.16.	4개월
7	ㅅㅅ 사업	2020.1.1.~2020.12.31.	2021.12.13.	10개월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정산보고서 제출기한을 준수하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보안업무 소홀

기 관 명 수산기술지원센터

관계부서 □□팀

내 용

1.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부적정

「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34조의3에는 비밀열람자는 비밀을 열람하기에 앞서 비밀열람기록전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세칙 제35조에는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표 1] 별지 제9호 서식과 같이 인수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40조에는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표 1] [별지 제9호 서식] 비밀문서 인수인계서(비밀관리기록부) (일부 발췌)

		(비밀문서 인수 비밀등급 Ⅱ급 (Ⅲ급 위와 같이 인수 20	는 건 · 건) 인계함.
인계자(전보관책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수자(보관책임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보안담당관)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표 2]와 같이 2건의 비밀문서에 대하여 비밀열람기록전에 관리번호 및 성명 등을 기재하지 않았고 비밀문서 표지에 관리번호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보안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인수인계를 하여야하나 [표 3]과 같이 비밀(대외비) 관리기록부에 인계자, 인수자, 확인자의 날인이누락되었다.

[표 2] 비밀열람기록전 미기재 및 관리번호 미작성 현황

연번	제목	비고
1	ㄱㄱ 계획	·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및 서명누락 (관리번호, 직위, 인가등급, 성명, 열람목적 등) · 비밀문서 표지에 관리번호 작성 누락
2	ㄴㄴ 계획	· 비밀열람기록전 작성 및 서명누락 (관리번호, 직위, 인가등급, 성명, 열람목적 등)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표 3] 비밀(대외비) 관리기록부 날인 누락 현황

구분	날인 누락 사항
비밀 관리기록부	· 2020.1.13.일자, 인수자·확인자 · 2021.1.11.일자, 인계자
대외비 관리기록부	· 2020.1.13.일자, 인수자·확인자 · 2021.1.11.일자, 인계자 · 2021.7.12.일자, 인계자·인수자·확인자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보안계획 미수립 및 보안교육 소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르면 각급기관의 장은「보안업무규정」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하는 기본정책에 맞추어 보안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 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조직 또는 인원의 지정·운영, 비밀소유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의 기록·유지 실태조사 등의 사항이 포함된 각급기관의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68조에는 보안담당관은 보안 업무 계획조정 및 보안 업무 감독 총괄, 보안 업무 수행실태 평가 및 그 결과에 대한 보고, 보안교 육, 비밀소유현황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행정안전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49조에는 각 기관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또는 비밀보관 책임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안교육의 책임을 지며, 소속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매년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보안계획은 감사일 현재까지 수립하지 않았으며, 보안교육은 2022.1.25.일 자체 보안교육을 제외하고는 실시하지 않았다.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비밀문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직원들의 보안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안계획 수립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하자검사 소홀

기 관 명 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0조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제6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이하의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상대자, 준공연월일, 하자발생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또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 제10절 (공사목적물의 하자)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총17건의 공사·물품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자담보 존속기간 설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부적정한 사항이 발생하였다.

1. 하자담보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하자담보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하자담보 존속기간을 정하 여야 하나, [표 1]과 같이 12개 사업은 목적물을 인수한 날 또는 검사완료한 날 부터 6일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하자담보 존속기간을 설정하였다.

[표 1] 하자담보 존속기간 부적정 현황

연번	사업명	목적물 인수일	검사완료일	하자담보 시작일	하자담보 종료일
1	ㄱ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2	ㄴ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3	ㄷ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4	ㄹ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5	ㅁ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6	ㅂ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7	ㅅ 물품 구입	2019.9.10.	2019.9.18.	2020.12.1.	2021.11.30.
8	O 물품 구입	2019.9.26.	2019.10.1.	2020.12.1.	2021.11.30.
9	ㅈ 물품 구입	2019.12.24.	2019.12.26.	2020.12.1.	2021.11.30.
10	ㅊ 보강공사	2020.12.18.	2020.12.18.	2020.12.27.	2021.12.26.
11	ㅋ 복구공사	2020.12.21.	2020.12.22.	2020.12.29.	2021.12.28.
12	ㅌ 개선공사	2020.12.23	2020.12.23	2020.12.29.	2021.12.28.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및 최종검사 지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표 2]와 같이 총17건은 정기하자검사를 1회만 실시하였으며, 최종검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년 이상 지난 시점인 2022.4.20.에서야 실시하였 고,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 발급해야 하는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았 다.

[표 2] 정기하자검사 미실시 및 최종검사 지연, 하자보수완료확인서 미발급 현황

연번	사업명	하자담보 시작일	하자담보 종료일	정기하자검사	최종검사일	하자보수완료 확인서
1	ㄱ 물품 구입	2018.10.17	2020.10.16	2021.3.22.	2022.4.20.	미발급
2	ㄴ 물품 구입	2018.9.19	2020.09.18	2021.3.22.	2022.4.20.	미발급
3	ㄷ 물품 구입	2018.10.3	2020.10.02	2021.3.22.	2022.4.20.	미발급
4	ㄹ 시설 공사	2019.12.24	2021.12.23	2021.3.26.	2022.4.20.	미발급
5	ㅁ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6	ㅂ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7	ㅅ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8	O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9	ㅈ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10	ㅊ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11	ㅋ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12	ㅌ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13	ㅍ 물품 구입	2020.12.1.	2020.12.1.	2021.3.22.	2022.4.20.	미발급
14	ㅎ 보강공사	2020.12.27	2021.12.26	2021.3.26.	2022.4.20.	미발급
15	그 복구광	2020.12.29	2021.12.28	2021.3.24.	2022.4.20.	미발급
16	ㄴㄴ 설치공사	2020.12.29	2021.12.28	2021.3.24.	2022.4.20.	미발급
17	ㄷㄷ 개선공사	2020.12.29	2021.12.28	2021.3.24.	2022.4.20.	미발급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3. 하자보수관리부 미비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9조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를 갖추어 두고 공사명 및 계약금액, 계약대상자, 준공연월일, 하 자발생내용 및 처리사항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하자보수관리부를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계약목적물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시 관련 규정에 따른 적정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라며, 정기하자검사 및 만료하자검사가 누락되지않도록 하자검사 시행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인 천 광 역 시 시정 요구

제 목 퇴직금 산정 및 지급 부적정

기 과 명 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21.1.11. 이전한 신청사 관리를 목적으로 2021년부터 청소용역을 통해 환경관리자 1명을 채용¹⁾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제34조에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 제도에 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대로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는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계약의 특수조건 제4조에는 '계약자(청소 위탁관리 용역 수행업체)'는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하여야 하고, 퇴직충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미 집행내역은 정산 조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 하고 퇴직충당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미 집행내역은 정산 조치하도 록 하여야 한다.

^{1) (}채용기간) 2021년 : 2021.3월 ~ 12월(10개월), 2022년 : 2022.1월 ~ 12월(12개월)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21년도 청소용역을 2021.3.2.부터 2021.12.31.까지 10개월로 산정하면서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표]와 같이 '2021년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에 기본급·연차수당·상여금을 비롯하여 퇴직금을 인건비에 포함하였고, 퇴직금을 10개월 동안 용역업체에 매월 181,240원씩 지급하였으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미집행 내역은 정산 조치를 하여야 하나 적립된 1,812,410원에 대하여 정산 조치하지 않았다.

[표] 2021년 수산기술지원센터 청소용역 산출내역서(인건비 발췌) 및 지출내역

(단위: 원)

계		기본급	연차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청소용역 산출내역서	월지급	2,107,140	100,820	263,400	205,950
	누계	21,071,400	1,008,200	2,634,000	2,059,500
지급액 (2021.3월~12월)	월지급	1,854,360	88,720	231,790	181,240
	누계	18,543,680	887,260	2,317,960	1,812,41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시정] 부당 지급된 퇴직충당금(1,812,410원)을 환수하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기 관 명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자치부령 제23호)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보조기관, 사업소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및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1, 2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표1】수산기술지원센터 연도별 업무추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3월	
과목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계	10,340,000	9,253,930	10,460,000	9,898,380	10,460,000	10,460,000	10,460,000	1,267,6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00,000	3,299,050	3,300,000	3,298,380	3,300,000	3,300,000	3,300,000	690,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600,000	2,514,91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3,600,000	437,000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0,000	2,999,97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3,000,000	80,600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40,000	440,000	560,000	-	560,000	560,000	560,000	60,000

◈ 수감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1.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미공개 및 기념품·상품권 등 구매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 별표 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회계관리 훈령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및 별표6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업무추진비로 기념품 및 상품권을 구입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지 않았고([표2] 참고), 2019년 ~ 2021년까지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사용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표2] 업무추진비로 기념품.상품권 구입 후 지급관리대장 미작성 내역

(단위: 원)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금액	비고	
2019.7.31.	ㄱㄱ 기념품 구매	830,000	시책추진	
2021.12.6.	ㄴㄴ 상품권 구입	520,000		
2022.1.28.	2022.1.28. ㄷㄷ 상품권 구입			
2022.3.15.	ㄹㄹ 상품권 구입	40,000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운영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3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4. 업무추진비에 따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실·과·소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서 전체직원의 사기앙양 경비및 과 운영비로 사용하되 부서운영 공통경비이므로 실·과·소장의 활동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책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 추진 관계자들

에게 집행하는 용도이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소속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창고 내 선반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집행하여야 적합한 사항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였으며, 시책업무추진비로 직원 격려를 하거나 직원 부친상에 따른 근조화환 구입을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처리하는 등 적절하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사실이 있다.[표3]

[표3]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단위: 원)

연번	예산과목	집행일자	집 행 내 용	금액	부당내용
1	부서운영	2020.12.22.	ㄱㄱ 구매	1,100,000	목적 부적정
2	시책추진	2020.11.25.	ㄴㄴ 격려	32,000	목적 부적정
3	시책추진	2020.12. 4.	ㄷㄷ 격려	212,000	목적 부적정
4	정원가산	2021.12.15.	ㄹㄹ 구입	40,000	목적 부적정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및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여 주시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무관리비와 혼동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목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

기 과 명 인천광역시수산기술지원센터

관 계 부 서 □□팀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관리 소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회계관리 훈령'이라 한다.) 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 책임하에 카드 분실·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의 사적 사용 및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표1 참고]을 작성·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표2 참고]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폼페이지 검색등)을 분임 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여야 한다. 만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은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표1]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

발급일자	발 급 매 수	금 융 기 관		카드번호	보 관	결 재		
		기관명	계좌번호	기드전호 (비밀번호)	책 임 자 (직·성명)	담당자	팀장	과장

[표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

21 Q 01 21	사 용 자			사 용	결 재		
사용일시	직	성 명	사용금액	내 역	담당자	팀장	과장

또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사용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기술연구센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있었음에도 2022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이를 작성·관리하지 않았으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보관하고 있는 공무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도 이에 대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월 1회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 및 결재를 시행하지 않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 회계 증거서류 등 보존관리 소홀

회계관리 훈령 제112조(증거서류 및 장부의 보존) 제1항에 따르면 지방회계법 제46조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거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항에 따라 증거서류는 해당 회계관서에서 보관하되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에 따라 생성된 문서는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정보처리시스템으로 생성하기 전의 원본이 있는 경우 전자적으로 증거서류를 생성한 부서에서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기술연구센터에서는 지출업무 처리시 증거서류 등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입력·확인하지 않고 회계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고 있는 등 회계 서류의 보존·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3.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규정 미준수

「인천광역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 규정」제2조(정의)에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사용 및 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6조(상품권 관리) 제1항에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구매·사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 제4항에서 상품권을 배부할 때에는 관리대장의 수령인 란에 수령한 사람이 자필 서명하여야 하며, 제8조(상품권 구매·사용내역 공개)에 따라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상품권 종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을 연 1회 이상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2021. 12. 6.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직원 사기 진작 및 생일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만원 상품권을 52매 구입하여 근무자들에게 배부하였다. 그리고 2022. 1월 및 3월에도 당월 생일인 자에 대하여 축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1만원권으로 6매를 구입·배부하였다.[표3]

[표 3] 수산기술지원센터 상품권 구매 현황

(단위: 명, 원)

연도	상품권 구매금액	상품권 수령인원	1인당 상품권 지급액	상품권 관리대장	수령자 사인	홈페이지공개
2021년	520,000	26	20,000	미작성	없음	미준수
2022년	60,000	3	20,000	미작성	없음	미준수

◈ 감사대상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그러나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이러한 상품권 구매 및 배부에 대해 상품권 관리대장에 작성·관리하지 않았고, 관련내용에 대해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지 않 은 사실이 있으며, 금번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서야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는 등 상품권 관리자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다.

조치할 사항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은

[주의] 회계업무 처리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수산기술지원센터 종합감사 결과

수범사례 1 수산물 안전성 조사 참관 프로그램 운영

◆ 시민, 어업인 등에게 중금속, 방사능 등 정밀분석과정 시연·설명, 홍보로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관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 제고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22. 4. ~ 11. (4회) ※ 매년 분기별 운영 예정

○ 참관대상 : 약 100여명(학생, 군·구 추천시민, 수협, 활어유통업체, 어촌계 등)

O 내 용 : 사업안내 및 당부사항 전달, 관내 어획·생산된 수산물(어류, 패류,

연체류 등) 시료 분석과정 참관 및 질의응답 의견수렴 등

□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 참관프로그램 운영(2회, 67명)

일 시	참석자	내 용	비고
2022. 4. 13.(수)	12명	· 프로그램 안내 및 홍보동영상 시청 · 수산물 안전성 조사 사업안내(PPT) · 분석실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분석실별 분석장비 및 조사항목 설명 · 수산물 시료 분해 및 균질화과정 시연·설명 · 균질화시료 화학처리 및 고온·고압·농축·	시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명예감시원)
2022. 5. 18.(수)	55명	· 분석질 안천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 분석실별 분석장비 및 조사항목 설명 · 수산물 시료 분해 및 균질화과정 시연·설명 · 균질화시료 화학처리 및 고온·고압·농축·	수산물 생산자 (수협, 어업인 등)
2022. 9월(예정)	-	- 심합·권심문다 등 문식점들 제소파성 시언·결성	-
2022. 10월(예정)	-	감압 원심분리 등 분석샘플 제조과정 시연 설명 · 유해물질(중금속, 방사능 등)별 정밀분석과정 설명 · 의겸수렴 및 질의응답(Q&A)	-

□ 기대효과

O 생산·거래 전 단계 수산물 안전관리 분석 과정을 공개하여 투명 하고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 생산·공급에 대한 홍보 및 신뢰제고

□ 현장사진





수범사례 2 귀어학교 개설[귀어귀촌활성화]

❖ 귀어귀촌 희망자가 어촌에 체류하며 어업, 양식업 등 기술교육을받을 수 있는 귀어학교를 개설하여 안정적인 어촌정착 지원

□ 사업개요

O 사업기간 : 2022 ~ 2023년

O 소요예산 : 10억원(국비 5, 시비 5)

○ 사업규모 : 약 400m²(약 120평) / 3층

O 사업내용 : 교육시설 및 생활관 등 귀어학교 신축

□ 추진사항

 ○ 2022. 4. 14. : 2023년 귀어학교 개설사업 계획 수립 및 사전 공모 신청(→해양수산부)

O 2022. 4. 28. : 2023년 귀어학교 개설 공모사업 선정평가

○ 2022. 5. 18. : 2023년 귀어학교 개설 사업대상자 선정

□ 기대효과

- 광역시 최초 귀어학교 개설로 수도권의 잠재적 귀어·귀촌 수요자 니즈를 충족시키고 맞춤형 교육을 통한 안정적 귀어 정착 지원 가능(타시·도 7개소 개설·운영 중)
- 인천시 수산업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귀어학교 개설로 어업· 양식업을 포함한 어촌관광·서비스업 등 교육의 다양화 및 성공적 창업 지원 가능
- O 귀어학교를 통한 전문 기술 교육을 받은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사회 활력증진과 도시민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 지원

수범사례 3 2021년 수산기술지원센터 주요 성과 보고회 개최

- ◆ 센터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별 업무성과를 관리·토론함으로써 합리적·객관적 업무 수행 및 책임행정 제고
- ❖ 다양한 직원들의 의견도출 및 행정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모색

□ 개 요

O 일 시: 2022. 1. 11.(화)

O 장 소 : 수산기술지원센터 대회의실

O 참 석 자 : 해양항공국장, 수산과, 수산자원연구소 등 16명

O 내 용: 18개 사업 담당자별 업무 성과 발표(수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어업생산기반지원, 전문수산인력육성, 어업인소득기반확보 등)

□ 2021년 주요 추진성과

- O (수산물 안전성 조사) 중금속, 방사능 등 42개 항목, 39개 품종 177건(적합 100%)
- O (수산물 원산지 지도·단속) 소비자 중심의 원산지 표시 지도(137회 / 5,009개소)

□ 2021년 애로사항

- O 수산물 안전성 조사항목 및 건수 확대에 따른 시료 구입 예산 부족
- O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으로 교육 축소 및 전문강사 인력 편중

□ 2022년 개선방안

- 수산물 안전성 조사 정밀분석 전문인력 확충(3명)으로 미생물분석실 가동 등조사건수('21년 177건 → '22년 200건)·항목('21년 42종 → '22년 50종), 예산 확대
- O 어업별 맞춤형 교육 진행을 위한 강사 인력풀제 운영(타 시·도 및 전문 강사 섭외)

□ 현장사진

